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532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채무조정자의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등 징수특례 규정 신설 (백혜련의원안)	3

I. 개요

1.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5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8. 2.
- (3) 회 부 일 : 2024. 8.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채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채납액인 ‘정리보류’ 채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채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채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채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채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채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채납조세 분납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

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9조의14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채무조정자의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등 징수특례 규정 신설(백혜련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4) ○ 대상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특례내용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5년 이내) -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는 강제징수 불가 *징수곤란 체납액 · 신청일 기준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신청일 기준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 신청일 기준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 징수특례 결정 절차 - 거주자의 신청을 받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채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특례 적용 여부 결정 및 통지 ○ 징수특례 취소 사유 - 신청일 당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 -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

* 백혜련의원안 2024. 8. 2. 발의(의안번호 2532)

□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선의의 채납자인 경우 채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 이내 분납을 허가하는 등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 현재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연체하거나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였으나, 고정소득(급여·연금·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채무자일 경우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잔여 채무를 탕감하여 주는 제도임.

동 제도의 경우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향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개인회생제도를 통한 세금 분납이 가능함.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없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자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동 제도는 조세채권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세금분납 등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 어려움.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¹⁾]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1963.01.	2004.09.	2002.10.	2009.04.	2019.09.
대상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 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예상 또는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이내 (담보35년)	10년이내 (담보35년)	10년이내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 이에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
항2)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징수가 어려운 채납

1)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debt/relief/debtrelief/info.do>)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의 개인회생에 비해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 보다 많은 채무자들이 개정안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선의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상환의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적채무조정을 받은 자에 대한 징수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들의 체납세금 상환 의지를 제고하고, 세수확보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현행법 제99조의10³⁾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하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액 징수특례와는 달리 ‘기간 요건’이나 특례 대상 ‘세목’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모든 세목에 대해 영구적인 제도로써 징수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채무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전제하지 않고 있어 세금분납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개정안에 따른 징수곤란 체납액은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향후 고정적·지속적인 소득 역시 증명되지 않을 경우 채무에 대한 분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기적 소득이 없을 경우 분납시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미납부로 인한 특례 취소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최종 분납기한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 확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음.

현행법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징수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상환의지뿐만 아니라 세금분납의 실현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⁴⁾.

4)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

셋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비교적 소액⁵⁾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비하여 쉽게 신청이 가능⁶⁾하고 이에 대한 채무조정 확정율도 상당히 높은데,

채납액에 대한 징수특례(가산세 면제, 분납 등)를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하여 허용하는 경우 채납자가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및 분할납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채무조정제도 신청 및 확정자 현황]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8월)
신청자 수	128,754	127,147	138,344	185,143	131,131
확정자 수	115,815	113,863	121,101	167,621	115,863
확정율(%)	90.0	89.6	87.5	90.5	88.4

자료: 금융위원회

문 의 처

02)6788-5161

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채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채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5) 총 채무액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하

6) 신청비용 5만원